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96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서동용・이용우・고영인

주철현 • 윤재갑 • 신정훈

양이원영•배진교•김민철

이용빈 · 김승남 · 김민기

인재근 · 양정숙 · 김정호

권인숙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오며 교육기회 확대와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사립학교 운영 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의 친인척 직원 채용 논란을 비롯해 특정 교원을 뽑기 위하여 공개전형 없이 채용을 실시하거나, 시험단계 및 방법을 임의로 바꾸거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음.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처럼 공개채용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무직원의 경우 채용 관련 조항이 부재하여 채용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사립학교는 법인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따른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인건비·운영비 등 연간 7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채용 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의 직원도 교원과 같이 공개 채용하도록 하고,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는 필기시험 을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제11항 및 제70조의3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의3을 제70조의4로 하고,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조의2제1 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 른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제3조(공개전형 중 필기시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 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3條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	第53條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
원의 임용) ① ~ ⑩ (생 략)	원의 임용) ① ~ ⑩ (현행과
<u><신 설></u> < <u>신 설></u>	같음)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
	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
	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
	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
	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
	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
	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의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교 사무직원의 임용) ① 제70
	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신규채
	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
	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 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법」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 소속 사무직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생 략)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현행 제70조의3과 같음)